

- 쌍용 더 플래티넘 삼계에 청약 당첨되신 것을 진심을 축하드립니다.
- 귀하가 청약하신 내용에 대해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자격 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게 되며, 자격 심사 과정에서 **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**
- 소명하지 못할 경우, 규칙 제57조 제 8항에 의거하여 당첨 취소되며,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**‘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간 청약이 제한’**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, 아래의 제출기한 내 당첨 유형별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I 사전 자격확인 서류검수 일정 및 장소

접수기간	2022년 07월 28일(목) ~ 2022년 08월 03일(수) [7일간 진행] 10:00 ~ 16:00
방문대상	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(예비당첨자 포함)
장 소	당사 견본주택(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88, 쌍용 더 플래티넘 삼계 견본주택)
유의사항	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7.08.)이후 발행분에 한함.

## II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제출 서류 ※ 추가서류는 대상에 해당되는 당첨자의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해당서류	발급구분	추가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서류	인감증명서 2부, 인감도장	본인	- 용도 : 주택공급 신청용(본인 발행분) /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차 대리신청 불가
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/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
	주민등록표등본[상세]	본인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,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※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[상세]	본인	-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성명/관계 등을 “전체 포함”으로 발급 ※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[상세]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뒷자리 표기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[상세]	본인	- 주민등록표상 당첨자가 미혼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
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- 당첨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
추가 서류	청약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	본인	- 견본주택 비치
	주민등록표등본[상세]	배우자	- 주민등록상 배우자 분리된 경우
	주민등록표초본[상세]	직계존·비속(피부양)	-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-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	가족관계증명서[상세]	직계존속(피부양)	-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-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혼인관계증명서[상세]	직계존속(피부양)	-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복무확인서	본인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존속(피부양)	-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※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-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※ 30세 미만 미혼 자녀 : 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※ 30세 이상 미혼 자녀 :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한 경우
대리인 신청시	위임장	청약당첨자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당첨자	- 용도 : 주택공급 신청용(본인 발행분) ※ 제3차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불가 - 단, 외국인의 경우 분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, 이에 관한 공정증서
	신분증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/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
	인장	대리인	- 대리인의 도장 또는 서명 가능

※ 상기 모든 제출하는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7.08.)이후 발행분에 한함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 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# 배점기준표 [일반공급 가점제, 노부모부양 가점제]

가점항목	가점상한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확인 서류
① 무주택기간	32	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			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기산하며, 만 30세가 되기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 신고일로 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</li> <li>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, 직계존속의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 이어야 함</li> <li>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청약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함</li> <li>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세대원으로 인정함</li> <li>※ 소형·저가주택 소유시 1세대만 소유한 세대에 한하여 주택을 소유하지않은 것으로 봄</li> </ul>
		1년 미만	2	8년 이상 ~ 9년 미만	18	
		1년 이상 ~ 2년 미만	4	9년 이상 ~ 10년 미만	20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6	10년 이상 ~ 11년 미만	22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8	11년 이상 ~ 12년 미만	24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10	12년 이상 ~ 13년 미만	26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12	13년 이상 ~ 14년 미만	28	
		6년 이상 ~ 7년 미만	14	14년 이상 ~ 15년 미만	30	
		7년 이상 ~ 8년 미만	16	15년 이상	32	
② 부양가족수	35	0명	5	4명	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양가족 산정 시 청약자 본인은 제외</li> <li>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봄(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세대원으로 인정받더라도 부양가족은 제외)</li> <li>직계비속(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됨) ※ 미혼자녀에 한정하며 이혼자녀는 인정되지 않음 ※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인정</li> <li>※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미혼의 손자녀인 경우 인정</li> </ul>
		1명	10	5명	30	
		2명	15	6명이상	35	
		3명	20			
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	17	6개월 미만	1	8년 이상 ~ 9년 미만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약통장(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)</li> </ul>
		6개월 이상 ~ 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11	
		1년 이상 ~ 2년 미만	3	10년 이상 ~ 11년 미만	12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4	11년 이상 ~ 12년 미만	13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5	12년 이상 ~ 13년 미만	14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6	13년 이상 ~ 14년 미만	15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7	14년 이상 ~ 15년 미만	16	
		6년 이상 ~ 7년 미만	8	15년 이상	17	
		7년 이상 ~ 8년 미만	9			
총점	84	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 + ② + ③				

※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, 해당 특별공급에 미적용(유주택자에 해당)